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용역·물품관리대장 기록·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93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할 경우에는 계약일자,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사일자 등이 실제와 상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본부에서는 5,000만원 이상 계약 건 25건¹⁾에 대해서 실제와 상이하게 기록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1) 감사기간 중 광주광역시 ○○○○본부 ○○○○과에서 제출한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5,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 중 40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 중 25건이 실제와 상이하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공사·용역·물품관리대장을 실제와 맞게 기록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